



법무부

더 나은 내일
희망의 교정

등록번호	보안과-21911	교정정책단장	기안자	교정관	보안과장	보안정책단장	교정본부장
등록일자	2019. 7. 31.						
결재일자	2019. 7. 31.						
공개구분	비공개(4)	이영민	이영민	황진석	우태백	김명림	황영우

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

교정기획과장	서리배
직업훈련과장	최재철
사회복지과장	유인상
복지과장	김민준
분류심사과장	하명준
의료과장	박동현
심리치료과장	박수영

2019. 7.

보안과



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

19. 7. 보안과

I 검토 배경

- 성소수자 개념·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 제고
-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 및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¹⁾, 인권침해,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수용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

II 성소수자란

- 트랜스젠더(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사람), 동성애자, 양성애자 등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로 퀴어 또는 LGBT²⁾라고 함

III 적용 법규

□ 헌법

◆ 제10조

-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◆ 제11조 제1항

-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1) ○○구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('19. 5. 2.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접수)

2) 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, 트랜스젠더의 약자로 성소수자를 말함

□ 형집행법

❖ 제4조(인권의 존중)

-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❖ 제5조(차별금지)

-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병력(病歷), 혼인 여부, 정치적 의견 및 성적(性的)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.

□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

❖ 제39조(성소수자 처우)

- ① 소장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, 성적체성,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(이하 “성소수 수용자”라 한다)는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 할 수 있다.
-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성희롱, 성폭행 및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1. 운동·목욕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 등
 2. 수용거실 앞 칸막이 설치 등 계호시설 보강
 3.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
- ⑤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하되,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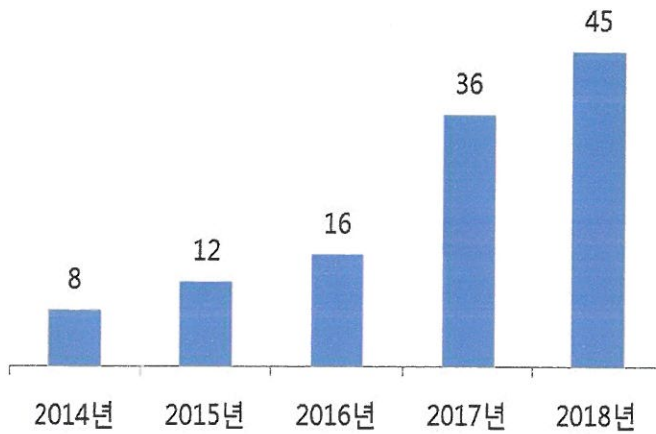
IV | 현실태 및 문제점

□ 성소수자 수용 현황

2019. 7. 22. 기준

구 분	소 계	성전환자	동성애자		양성애자	여장남자 (Shemale)	남장여자 (Hefemale)
			게이	레즈비언			
인 원	53	4	24	8	6	7	4

최근 5년간 성소수자 수용 현황



- 성소수자 수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

※ 2018년도는 2014년보다 5.6배 증가

□ 성소수자 처우 계획 부재

- 전국 53개 교정기관³⁾ 중 성소수자 처우 자체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미흡
- 신입절차, 거실지정, 수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이 없어 차별행위, 인권침해 발생 개연성 상존

□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

- 일반수용자에 비해 성소수자의 입소 사례가 많지 않아 성소수자의 내면심리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수용처우에 소극적이고 고충해소에 미온적임
-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초래

V

성소수자 유형

□ 트랜스젠더

- 생물학적 성(sex)과 정신적 성(gender)이 일치하지 않은 자로, 물리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(성전환자) 포함

3) 2019. 7. 22. 기준, 성소수자 수용기관은 서울구치소 등 26개 기관, 미수용기관은 안양교도소 등 27개 기관

- FTM :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자
- MTF :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자

- 여장남자(Shemale) :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여성미를 강조한 의상을 착용하거나 호르몬치료 등으로 여성화되는 자[反, 남장여자(Hefemale)]
- 레즈비언(lesbian) : 여성간 동성애자
- 게이(gay) : 남성간 동성애자
- 양성애자(bisexual) : 이성과 동성 모두 사랑하는 자

VI | 개선 방안

□ 처우 기본원칙

- 성소수자의 성(性)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의 편견과 유형·비유형적 폭력으로부터 보호

- ◆ 성전환자
 - FTM(여성→남성) : 수용 당시 신체적 성(性)인 남성으로 처우
 - MTF(남성→여성) : 수용 당시 신체적 성(性)인 여성으로 처우
- ◆ 성전환자를 제외한 트랜스젠더 : 생물학적 성(性)으로 처우
- ◆ 여장남자(Shemale) : 생물학적 성(性)인 남성으로 처우
- ◆ 남장여자(Hefemale) : 생물학적 성(性)인 여성으로 처우
- ◆ 동성애자(레즈비언·게이), 양성애자 : 생물학적 성(性)으로 처우

□ 성소수자 처우 관련 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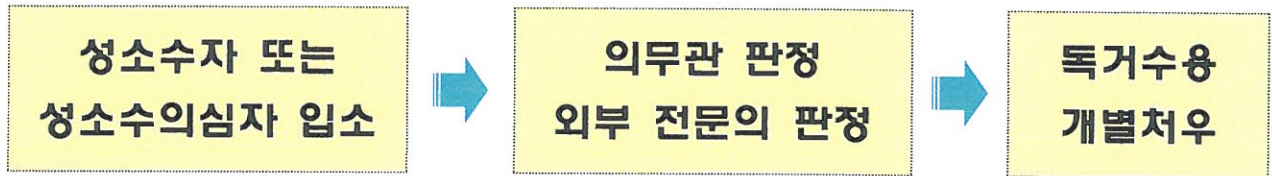
○ 입소 및 판정절차

- 성소수(의심) 수용자 입소 시 다른 수용자와 분리 후 거실지정 및 고충 처리반, 의료과에 통보
- 평일 주간의 경우 입소자 외모·진술, 의무관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소수자 여부를 판정. 야간(휴일)의 경우 당직교감이 성소수(의심)

입소자의 외모·본인의 진술·범죄개요 등 관련사항을 확인 후 분리수용하고,
추후 의무관 진료 실시 후 판단

- 필요한 경우 외부의료시설 비뇨기과, 산부인과 등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성별판정을 받아 수용관리
- 신체 및 소지품 검사, 환복, 목욕 등 절차는 생물학적 성(性)을 고려하여 동성(同性) 근무자가 실시

※ 성전환 수술을 한 수용자의 경우 현재 신체적 성(性)을 기준



○ 거실지정

- 성전환자 : 수용 당시 신체적 성(性)에 따라 지정
- 성전환자를 제외한 트랜스젠더, 여장남자(Shemale), 남장여자(Hefemale) : 생물학적 성(性)에 따라 지정
- 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 : 생물학적 성(性)에 따라 지정
- 성소수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불가피한 경우 일반수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위치의 거실에
수용 후 본인 의사를 참고하여 거실 앞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
하는 등 시설 보강

※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급적 수용동 맨 끝 또는 적정한 거실 수용

※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,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
혼거수용 가능

※ 성소수자 본인이 혼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, 교정사고
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
- 일과종료 점검 후부터 익일 일과시작 점검까지 수용자의 이동이 없는
시간대에는 칸막이(가림막) 제거 가능
- 성소수자가 수용 중인 분리 구획에 불필요한 통행 등 제한

○ 의료처우

- 단순 질환의 경우 거실치료 및 순회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검사를 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, 의료과에 동행 진료하며, 수용동 거실에서부터 진료실까지 단독 동행 및 진료 종료 후 즉시 환실
- 사전에 진료시간을 조율하여 진료 전·후로 성소수자가 환자대기실에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부득이 대기 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이목을 끌지 않도록 좌석지정 등에 유의
- 성소수자가 자비부담 호르몬 투여 등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관 상담 등을 통해 그 필요성,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
 - ※ 자비부담으로 하는 호르몬 투여(교정시설 내)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
 - ※ 의료처우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입소 전 수술 또는 치료(호르몬 투여 등) 병원에 관련 사항 확인
- 정신과적 치료가 특히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의 초빙진료 또는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 등 실시

○ 물품 지급 및 서류 교부

- 성전환자 : 수용 당시 신체적 성(性)에 따라 수용자복·신발 지급
- 성전환자를 제외한 트랜스젠더, 여장남자(Shemale), 남장여자(Hefemale) : 생물학적 성(性)에 따라 수용자복·신발 지급. 다만, 속옷·화장품 등은 해당 수용자의 의견 및 성(性)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이성(異性)의 물품 지급 가능
- 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 : 생물학적 성(性)에 따라 수용자복·신발 지급
- 영치품, 자비구매물품 등 교부 시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
- 각종 서류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 및 수용동 근무자가 직접 전달하고 수용자간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○ 운동, 목욕, 접견(전화), 이발

-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

❖ 이발 관련 참고 사례

- 2014. 1. 17. 09:40경 ○○(교) 수용자 김○○(트랜스젠더)가 수용관리팀장의 이발지시를 거부하여 조사수용, 1. 28. 징벌(금치9일) 처분
- 2014. 4. 10. 징벌처분 취소소송 제기 / 2015. 5. 7. 원고 승소 확정

○ 종교행사

- 집합 종교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와 좌석을 분리하여 실시
- 개인교회(종교상담)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종파에 요청하여 실시

○ 상담

-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를 위해 수용관리팀장 등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상담 및 집중관리
 - ※ 심리치료 전문상담(위기·심층상담 등)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정서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 노력
 - ※ 작업·직업훈련 및 교육·교화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에는 필요 시 상담
- 전담 상담직원 및 감독자 등은 성소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해당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, 상담 등 처우 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

○ 거실 및 신체검사

-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감독자 입회
- 신체검사 시 반드시 2명의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
- 허가 품목을 사전 숙지 후 검사 실시

○ 개인정보 보호

- 업무 관련 직원만 성소수자 정보에 접근 가능케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
- 필요 시 전산업무 담당자는 해당 수용자의 전자신분카드 로그기록 확인

○ 작업·직업훈련 및 교육·교화프로그램

- 성소수자의 나이·건강상태·성격·취미·경력·장래생계, 본인 의사, 해당 작업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(직업훈련) 부과 가능. 이 경우 일반수형자와 혼거수용 등 공동생활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결정

- 성소수자의 개별적 특성, 본인 의사, 해당 교육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, 문화프로그램 및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실시 가능
- ※ 작업·직업훈련 및 교육·교화프로그램 사항은 교도관회의에서 심의

○ 출정

- 호송차량 좌석은 1인석으로 지정하고 단독 계호
- 검사조사실 또는 재판정 동행은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단독 계호
- 구치감 대기 시 독거실 수용. 다만,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,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 가능

○ 기타 사항

- 성소수자 처우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(의사·상담자 등), 관계 직원 및 교정위원 의견 반영
- 작업·직업훈련 및 교육·교화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 하는 경우 혼거운동 등 일반수용자에 준하여 처우 가능
- 수용동정, 상담, 진료 등 경과관찰을 통해 성소수자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수용자로 처우

□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강화

- 성소수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목을 법무연수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 편성
- '20년 상반기부터 교정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, 인권감수성 향상

□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

- 입소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·규율위반 예방 교육 및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안내
- 기동순찰팀 순찰 및 탐문 활동 등을 통한 성범죄 예방
-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여 징벌 처분 및 입건 송치

VII | 행정 사항

- 각 교정기관장은 기관 실정에 맞는 ‘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계획’을 수립·시행
-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, 기동감찰 시 소속 기관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이행실태 점검
-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은 '20년 교육과정에 ‘성소수자 인권보호 과목’ 편성
- 기 시달된 「성전환 수용자 수용처우에 관한 지시」(법무부 보안 제1과-보안일61406-3202, 2003. 12. 19.) 공문 폐지. 끝.

[첨부] 수용거실 앞 칸막이(가림막) 설치 예시

□ ○○구치소

